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5. 26 선고 2020가단567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

피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

담당변호사 구희승, 윤철호, 조재건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광재, 이현동

변 론 종 결 2021. 4. 7.

판 결 선 고 2021. 5. 26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0. 16. 체결된 증여계약을 155,132,000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55,132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B은 약사가 아니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급여 명목의 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약사 C을 고용하여 2014. 11. 4.경 C 명의로 여수시 D, 1층에 'E'을 개설하고 2018. 2. 21.경까지 약을 조제판매하면서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.

나. B은 2018. 10. 16.경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,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접수 제225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B은 약사가 아님에도 E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. 3. 28.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(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2583)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라. 원고는 2019. 5. 28.경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B으로부터 E과 관련하여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중 1,786,316,22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(이하 '이 사건 환수결정'이라 한다)하고 B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1)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한 날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,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8. 10. 16. 당시 원고가 B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1,786,316,220원에

관한 환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, B는 2020. 7. 30.까지 원고에게 9,630,440원의 채무를 변제하였고, 이에 따라 2020. 7. 30.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환수채권은 원금 1,786,163,010원 및 연체금 151,291,210원 합계 1,937,454,22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) 피고는,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, 비의료인 개설자와 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 및 이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환수결정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에 의한 채권액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결국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환수결정에 의한 환수액 중 일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, 설령 이 사건 환수처분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수결정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¹⁾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) 다음으로 피고는, 약국의 업무는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약품을 조제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요양급여비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환수결정에 의한 채권액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보험급여비용의 징수처분은 관련법령상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그것이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으로서 그 요건이나 행사방법 등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, 실제로 이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조제·교부하고 수령한 요양급여비 상당액을 실제로 이득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 환수결정의 효력이나 그 결정액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

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,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B은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환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,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.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.

2) 이 사건 증여계약이 B의 재산처분의 중간단계라는 주장에 관하여

피고는 B이 자신에 대한 약사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도 모르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F에게 매도하였으니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하라고 하였다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이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중간단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B의 증여의사와 피고의 수증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B이 F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허위표시에 불과하다는 취지라고 보이는데,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50985 판결 참조)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.

설령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(다만, B이 자신에 대한 약사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) 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 역시 신탁자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

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(대법원 2016. 7. 29. 선고 2015다56086 판결 참조),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방해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.

다. 원상회복의 방법

1)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(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다214319 판결 등 참조).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,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의 가액과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. 그리고 이 경우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및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5,320,000원이었던 사실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B, 근저당권자 H조합, 채권최고액 80,200,000원인 근저당권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56,280,000원인 사실,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인 2018. 11. 1.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, 그 가액배상의 한도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.

3)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, 이 사건 변론종결시인 2021. 4. 7.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11,412,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55,132,000원(= 211,412,000원 - 56,280,000원)이 된다.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2020. 7. 30.을 기준으로 한

원고의 잔여 피보전채권액 원금은 1,786,163,01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고,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.

4) 결국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상당액인 155,132,000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155,132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라.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

피고는 B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F에게 매도하였고 F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40,600,000원은 B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,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다211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설령 피고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을 B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 채권자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B에게 복귀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안태윤

목 록

1. 여수시 I 대 62㎡
2. 여수시 I [도로명주소] 여수시 D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주택
 - 1층 (점포) 48㎡
 - 2층 (점포) 48㎡
 - 3층 (주택) 48㎡. 끝.

1)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서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(대법원 1973. 7. 10. 선고 70다1439 판결).